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집중호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청송) —

2026. 7.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가사업소
내 용

청송군 가사업소에서는 □□면 □□리 □□□번지 ‘◇◇◇◇◇◇◇◇◇◇◇◇◇◇◇◇ 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담당(나과 공사감독)하면서 20○○. ○월부터 20○○. ○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적인 행정절차, 현장 내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표 1] ◇◇◇◇◇◇◇◇◇◇◇◇◇◇◇◇ 사업 추진 현황 “생략”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추진 소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등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건축물 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기간은 건설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청송군 가사업소에서는 ‘◇◇◇◇◇◇◇◇◇◇◇◇ ◇◇◇◇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일(20〇〇. 〇〇. 〇〇.)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〇〇. 〇〇. 〇〇. 설계의도 구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〇〇. 〇〇. 〇〇. 용역을 착수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도서 해석 및 시공상세 검토, 각종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설계자의 자문과 설계의도 확인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품질관리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을 포함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품질시험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품질관련 문서 작성·관리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활동비를 포함한 품질관리비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정예정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등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송군 나과 및 가사업소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추진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품질관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착공 시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에 대하여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품질시험 실시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송군 가사업소에서 ‘◇◇◇◇◇◇◇◇◇◇◇◇ ◇◇◇◇ 사업’ 추진하면서 설계단계에서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품질시험 관련 비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용역감독자와 담당 부서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인 (주)◆◆◆◆이 착공계와 함께 품질시험계획을 담당 부서에 제출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자에게 경유되지 않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발주자의 승인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확인,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등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등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¹⁾, 수직보호망²⁾ 또는 방호선반³⁾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나과 및 가사업소에서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작업 중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안전난간 등의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 또는 탈락된 경우 즉시 보수 또는 재설치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정리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청송군 나과 및 가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일부 구간의 수직보호망 설치 및 관리 미흡, 동바리 및 가설 비계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개구부 추락방호시설 및 낙하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자재 적치로 인한 작업통로 미확보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 ◇◇◇◇ 공사 안전관련 현황 “생략”

-
- 1) 건설현장 내 작업 중 발생하는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근로자 및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시설
 - 2)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 3)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시험비 계상 및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 현장 내 안전 시설 등 정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다과
내 용	

청송군 다과에서는 “△△△ △△△ △△△ △△△△ 외 1건” 을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송군 다과에서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를 추진하면서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부적정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청송군 다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사본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를 추진하면서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또한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⁴⁾을 공사 금액에 계상

4) ①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②안전점검비용, ③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2조, 제53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송군 다과에서는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관리비 계상하고, 목적 외 계상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가설창고” 항목을 계상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1,510천 원을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지대책 비용, ④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⑤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의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시험관리관으로, 이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별표6)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확인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다과에서는 품질관리 활동비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를 추진하면서 품질관리활동비 초급기술자 인건비 〇〇〇천 원을 계상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

4. 주요기자재 공급원 미승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131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주요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다과에서는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를 추진하면서 현장 내 반입되는 주요 기자재 교량 슬라브에 소요되는 레미콘(338㎥)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송군 다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 발생한 사토 운반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비 ○○○천 원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현황 “생략”

그 결과 공사원가 등이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이행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원 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